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20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8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 개정내용 및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른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반영(제8조)

개정법은 법률에서 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고시에 규정된 지정 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법 제18조의4제3항 제3호~제5호).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 규정된 지정해제 사유 삭제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제4조제3항) 입지개선과장 → 기업구조개선과장

2)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영 제11조의13 → 영 제11조의21

3) (제20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른 변경(제28조)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기업구조개선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1) 전자우편(이메일) : yubin1@korea.k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우편번호 30121)
- 3)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전화 044-204-7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